

#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해외학회 참가비 보조금 지급규정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에서 지원하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(이하 "학회"라 한다.) 회원 및 재단 임원의 해외학회 참가여비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명칭)

본 보조금의 명칭은 해외학회 참가비 보조금이라 한다.

## 제3조 (지급대상자의 자격)

본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학회 회원 혹은 재단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낸 자로 한다.

1. 국제학회의 연자,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. 단,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 1인
2. 국제학회의 좌장 혹은 토의자로 선정된 자
3. 국제학회의 조직위원으로 선정된 자
4. 기타 재단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재단 이사장이 판단한 자

## 제4조 (해외학회의 선정)

재단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외학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 이사장이 임원회의 토의를 거쳐 선정한다.

## 제5조 (구비서류)

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자는 아래의 각 호중 해당하는 서류를 지급 심사 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(별지)
2. 학회초청장 사본 1부
3. 연제 및 연자가 명시된 학회 순서 및 초록 1부 (본인에게 발송된 이메일 사본도 가능함) 각 1부
4. 국제학회 조직위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

## 제6조 (지급심사 및 대상자 선정)

지급심사는 해당학회 조직위원회나 학회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하며 재단 이사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.

## 제7조 (지급방법 및 지원금액)

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운임, 식비, 숙박비, 학회등록비 범위 내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며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은 학회 이사회에서 조정, 결의한다.

## 제8조 (결과처리)

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혹은 여행 대행자는 해당액수의 영수증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9조 (보칙)

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## 부칙

본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